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노식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48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0일
발 의 자 : 노식래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경영·김광수·김기덕
김상훈·김인호·김재형
김정태·김호평·김화숙
김희걸·박순규·송아량
양민규·이석주·이성배
전병주·한기영·홍성룡
의원(18명)

1. 제안 이유

-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축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현행 조례 제 27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중 주차장 설치기준은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에서 별도의 완화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
-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차장 완화기준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현황 여건과 도시재생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

- 이에 현행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 완화기준을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주차장 완화규정 도입이 조기 실효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축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
- 나.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
 - 신축·개축·재축·이전 :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
 - 증축 : 주차장 1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”를 “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”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신축·개축·재축·이전 :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
2. 증축 : 주차장 1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7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.</p>	<p>제27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로서 <u>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</u> ----- -----.</p> <p><u>1. 신축·개축·재축·이전</u> : <u>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</u></p> <p><u>2. 증축</u> : <u>주차장 1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</u></p>